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 덕 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임의대리인에게 정보 공개 시, 청구(위임)인에 대한 확인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의 이용 편의성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의대리인에게 정보 공개 시, 청구(위임)인 확인요건 완화(제15조)

- 1) 청구된 정보를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청구(위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원본’에서 ‘사본’ 확인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의 편의성 증대

나.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임명·위촉권자 변경(제20조)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법 제22조·제23조)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명·위촉 권한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협의중

대통령령 제 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호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 나.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제20조 중 “국무총리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① (생 략)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2. (현행과 같음)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 나.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부위원장은 같은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
리가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부위원장은 같은 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
안전부장관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연 락 처	(044) 205-2407